

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2. 10. 13.(목) 16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2년 10월 5일
- 회부일자: 2022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아동·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에 대한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이유

- 최근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·유포협박·저장·전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특히, 지난 2020년 텔레그램 ‘n번방 사건’<sup>1)</sup>에 이어 최근 ‘제2의 n번방 사건’으로 불리는 성착취범 ‘엘’ 사건<sup>2)</sup>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날로 다양화·지능화되고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음.
- 더욱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면서 지난 2018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5년 동안 학교 내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가 1,860건<sup>3)</sup>에 달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1) ‘n번방 사건’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,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, 성 착취 사건이다.

2) ‘엘’은 2019년 ‘n번방’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,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,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.

3) ※ 2018년 ~ 2022년 8월 초·중·고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

(단위 : 건)

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 8월말 현재
218	464	427	461	290

자료 : 교육부

- 이에,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###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기관	법령명	공포일
1	서울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1.03.25
2	경기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0.11.12
3	경남	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1.11.04
4	경북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2.01.03
5	대구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	2021.12.30
6	세종	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2.04.20
7	울산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	2021.07.01
8	제주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	2022.01.12
9	충남	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	2022.10.11

#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·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하고,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,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이와 관련해,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2 등에 의거,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과정을 평균 15차시 이상 편성·운영 중에 있음.

### 관내 학교 학년별 성교육 평균 시수

급별	학교수	학급수	학생수	성교육 실시 결과 현황(학년별 평균 시수)						계(평균)
				1학년	2학년	3학년	4학년	5학년	6학년	
초	259	4,213	83,795	15	15	15	15	15	15	15
중	129	1,703	42,428	16	16	16				16
고	85	1,970	39,877	16	15	16				15
특수	10	271	1,304	15	15	15	15	15	15	15
계	483	8,157	167,404	15	15	15	15	15	15	15

### 성교육 예방교육 실시 현황

급별	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				
	학생(명)			교직원(명)	
	교육대상인원(학급수)	교육실시인원(학급수)	급당교육시수	교육대상인원	교육실시인원
초	83,791 (259)	83,790 (259)	4	11,174	11,108
중	42,426 (129)	42,418 (129)	2	5,713	5,669
고	39,679 (85)	39,015 (85)	5	5,707	5,609
특수	1,304 (10)	1,302 (10)	4	902	894
계	167,200 (483)	166,525 (483)	4	23,496	23,280

※ 자료제공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

- 다만, 이러한 교육과정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

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간 의무이수 시간을 제도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해 상담을 비롯한 전문적 보호·지원 시설과의 연계,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충청북도, 충청북도경찰청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특히, 충청북도에서도 지난해 제정한 「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 제8조<sup>1)</sup>에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어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 기반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·군,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